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007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0073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2018가합5736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김민수

피고, 항소인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손현정, 김나라

피고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변론 종결 2021. 4. 8.

판결 선고 2021. 6.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2018가합57361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1,472,2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070/2,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80/2,150 지분에 관하여1),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2),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103,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들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4쪽 제8행부터 제16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8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산정 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귀속재산처리 및 매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소유명의자들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위 시점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제1심 감정인 BN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까운 2019. 6. 10.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3,18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제1토지	340,637,000
제2토지	383,173,0003) = 입주권가격 370,421,000원 + 청산금 12,752,000원
제3토지	395,438,000
제4토지	216,576,000
제5토지	233,253,000
제6토지	233,675,000
제7토지	300,436,000
합계	2,103,188,000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감정인 B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위 제1심 감정인 B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다고 다룬다.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BN의 감정결과는 2019. 6. 10. 기준시점으로 평가된 것으로 이 법원 감정인 BO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8. 2. 23.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는 점, 이 법원 감정인 BO의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때인 2018. 2. 23.을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을 감정한 것인바, 위와 같은 현금청산금을 기초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감정인 BN의 감정결과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인데, 망인과 원고가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귀속여부를 파악하였거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도 상당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시가 상승액에 상응할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72,231,600원(= 원고의 손해액 2,103,188,000원 $\times$ 0.7)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정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이준영

판사박원철

별지

1) 이 사건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C,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F,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3) = 입주권가액 370,421,000원 + 청산금 12,752,000원